

이슈브리프

#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 | 금주의 이슈 |

- I.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 5
- II. 사내유보금에 불편한 진실 / 17
- III.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 27

## | 특집 현안보고 |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

# 이슈브리프

2018. 10. 25

---

**I.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 5**

**II.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7**

**III.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 27**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주의 이슈

◆ 금주(10월 넷째 주)는 고용정책, 부동산정책, 기업정책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이 오히려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끝으로 제3편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류를 정리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반기업정서 차단 방안과 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제1편 :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_장경수 선임연구원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文정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태는 비정규직 체로 정책의 졸속 추진과 이를 채용잔치로 악용한 귀족노조의 합작품으로 드러남.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실태와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할 필요가 있음

◆ 제2편 :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_김창배 연구위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선동적 주장이 재발. 이는 기본적으로 '사내유보금'을 분배도, 투자도 되지 않은 채 기업 금고 속에 쌓여 있는 현금이라는 오류에서 비롯. 따라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류'를 재정리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반기업정서를 차단하고 기업정책에 대한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 제3편 :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_김영현 연구원

9.13부동산대책 발표에서 밝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서울시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의 수도권 택지공급 발표 전후로 그린벨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매년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정책 발표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주택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됨. 또한 그린벨트 3등급 이하 토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더불어, 중장기적 집값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018. 10. 25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선 동

# I.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 02-6288-0527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文정부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태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졸속 추진과 이를 채용잔치로 악용한 귀족노조의 합작품으로 드러남.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실태와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할 필요가 있음

## 1. 충격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 □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논란

○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사 합의에 따라 양측은 올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 전환

- 단, 무기계약직 중 경력 3년 미만인 직원들은 7급보로 임용

○ 그러나 올 7월1일 처음 실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평가부터 파행

- 민노총 산하 공사노조<sup>1)</sup>가 ‘불합격자가 나오는 시험은 직원들 갈등

1) 서울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공사노조(1만2천명)와 한국노총 소속의 통합노조(2400여명) 등 2개 노조가 있음

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전원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고 주장

- 또 시험을 앞두고 시험문제와 범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공정성을 이유로 거부

○ 정규직 전환시험의 합격률이 93.5%에 이르자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예고돼 있던 시험을 올해 안으로 추가 실시하라는 요구

- 민노총 소속 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작성한 '노사특별합의서' 에 정규직 전환시험을 올해 안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논란

[표]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정

2017년	7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시(市)투자출연기관 11곳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12월	서교공 노조,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및 관련 시험 실시 합의
2018년	2월	서교공 정규직 400여명, 헌법소원
	3월	서교공, 무기계약직 1,285명 정규직 전환 입사 3년 이상은 7급, 3년 미만은 7급보로 전환
	6월	서교공 노조, 전철 무인화 반대하며 농성 시작 공사측 "7급보를 7급으로 일괄 승진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
	7월	서교공, '7급보의 7급 전환 위한 직무역량평가 시험' 실시 민노총 계열 1노조, '100% 합격 보장' 요구하며 시험 거부
	9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광장에서 농성중인 서교공 노조와 면담 이후 서교공 노사 '전환시험 올해 실시' 합의

□ 안전업무직 뿐 아니라 일반업무직까지 정규직 전환

- 서울교통공사는 당초 목적인 시민안전과 열악한 안전업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업무직의 정규직 전환<sup>2)</sup>뿐만 아니라 목욕탕관리사와 식당조리원, 매점, 이발사 등 일반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

구분	합계	일반업무직 (정원 457/현원434)								안전업무직 (정원998/현원851)					
		식당 찬모	목욕 탕	이용 사	면도 사	세탁 소	매점	지하 철보 안관	운전 기사	승강 장안 전문	전동 차검 수지 원	역무 지원	구내 운전	모타 카및 철도 장비	계도 수원
정원	1,455	117	10	12	6	1	5	304	2	381	319	13	90	176	19
현원	1,285	107	8	11	6	-	5	295	2	361	302	6	56	107	19

자료: 유민봉 의원실, 2018년 3월 1일 현재

#### □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장 16조에 따르면 임직원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이 금지되어 있음
  -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침이 서울시 공식발표 시기보다 1년 앞서 정해졌으며, 내부 정보로 이를 알게 된 친인척들이 대거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실제 친인척 재직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응답률 11.2%)에서 친인척

2) 올해 6월 서울 동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배경이 되었던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민노총 노조원의 무단이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이 있다고 답한 직원은 108명이며,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 文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

### □ 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및 현황

	계획	현황
1단계	중앙부처·지자체 등 853곳 17만 4,935명	15만 4,526명(88.3%) 전환 및 전환결정(2018년 9월말 기준)
2단계	지자체 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00곳 1만 5,974명	올 6월부터 추진
3단계	민간 위탁 기관	실태조사 후 대상기관 및 인원 확정

자료: 고용노동부

### □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

○ 文대통령의 공약대로 현 정부 출범 직후에 정규직 전환이 전광석화로 진행됐지만, 불공정 채용 등을 막기 위한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전무

- 고용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감독할 권한이 없는데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구속력 없는 권고에 불과한 점이 문제
- 채용비리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정부의 구속력 없는 지침은

현장에서 무시됨

[표]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 가이드라인	2단계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및 전환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어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li> <li>-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하며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정당하게 채용되었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후 전환대상자 여부 판단</li> <li>-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li> </ul>
근로자 전환 채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li> <li>-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임의적 평가시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li> </ul>	
정규직 전환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병행 예정</li> </ul>	

자료: 고용노동부, 5월 31일 발표

## □ 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 지난해 5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지난 8월까지 공공부문 기관 853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여명 중 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이 확정됨

- 부문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3만5059명, 중앙부처가 1만7406명, 교육

기관 1만5597명, 자지단체 1만3259명, 지방공기업 3722명 순

-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초를 정해놓고 공공기관에 빠른 실행을 압박하자 이를 이용해 기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비정규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예측이 가능

[표] 文정부 정규직 전환 상위 10개 기관

	공공기관	전환인원(%)	지방공기업	전환인원(%)
1	한국마사회	5,561(72.9)	광주도시철도공사	296(87.6)
2	한국토지주택공사	2,997(88.9)	안산도시공사	159(41.8)
3	한국철도공사	1,825(26.5)	전주시설관리공단	127(60.2)
4	인천국제공항공사	1,648(20.0)	인천교통공사	115(24.3)
5	부산대병원	1,269(64.3)	세종도시교통공사	106(126.0)
6	한국수자원공사	1,227(73.1)	고양도시관리공사	95(59.7)
7	국민체육진흥공단	977(80.7)	대전마케팅공사	94(64.4)
8	국립공원관리공단	775(62.2)	서울중구시설관리 공단	81(66.9)
9	국민연금공단	762(56.6)	김대중컨벤션센터	71(74.7)
10	한국폴리텍	760(47.9)	천안시설관리공단	69(54.3)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 6월~2018년 8월 기준

### 3. 채용비리 사태 이면에는 귀족노조

□ 공공기관을 서서히 장악하는 귀족노조

○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의심사태가 급증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자녀 15명, 형제 3명, 배우자 1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16곳에서 부정채용 의심자 29명, 부정채용 알선자 24명이며,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 중 임직원 친인척이 33명, 남동발전은 7명, 한국도로공사도 4명으로 드러남

□ 대기업을 서서히 장악하는 귀족노조

-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서 단협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여전히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하지만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표] 양대 노조 ‘우선채용·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노동조합명 (노조원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1	금호타이어 (2,997)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S&T대우 (336)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수요가 있을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을 우선 채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조합명 (노조원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3	태평양밸브공업 (56)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사망시 노사 합의하여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현대자동차 (47,383)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 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현대로템 (1,705)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총원시 정 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S&T중공업 (459)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 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한다
7	두산메카텍 (87)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의 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하는데 협조한 다
8	성동조선해양 (1,023)	민주노총 금속노조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외 상병이나 장 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비 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하도 록 한다
9	현대종합금속 (340)	한국노총	회사는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시 우선 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10	롯데정밀화학 (413)	한국노총	회사는 직원 채용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 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그 성적이 외 부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 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료: 김동철 의원실(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4. 평가 및 대응방안

평가: 무능한 5년 단임 정권과 귀족노조의 합작품

○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취지 변질과 졸속 추진

-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기관장들이 실적 올리기 경쟁에 나서 무분별한 행태를 벌이고 있고, 정치인 단체장들이 포퓰리즘에 가세하면서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남
-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영여건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함
- 고용시장은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둘 때 비로소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근로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
-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숫자 눈속임을 위해 단기 알바 수만개를 급조하는 모순된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책임을 느끼긴 커녕 친인척 채용잔치로 악용한 귀족노조

-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중이던 10대 외주직원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채용 확대의 빈틈을 친인척 채용잔치로 활용하는 귀족노조는 후안무치(厚顏無恥)의 전형
- 또한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 두 명이 별다른 경력없이 공사의 개·보수 담당 무기계약직으로 기획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노사협

상을 주도한 것은 충격 그 자체

○ 좌파기득권 귀족노조는 신(新)적폐

-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자녀에게 고용을 세습해주는 ‘현대판 음서제’ 문화를 신(新)적폐로 규정
- 노조원의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거나 입사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강력 비판해야 함

□ 대응방안

○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이끌어내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빌미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내 사람 채워넣기’에 열 올리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할 필요
-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이번 채용비리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
- 또한 노동운동의 초심을 잊은 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없는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실태를 연속기획물로 발간하여 홍보할 필요

- 文정부에 내민 ‘촛불청구서’ 로 인해 귀족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필요
  -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 개혁을 위해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노동자 중심인 귀족노조의 양보가 필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
  - 노동시장의 과실을 독점하며 국민적 요구와 배치되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실태와 정부의 무능함을 적극 폭로하고, 文정부와 귀족노조 간의 모순과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전략적 접근이 필요



## II.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 김창배 연구위원 ☎ 02-6288-0534

여권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선동적 주장이 재발. 기본적으로 ‘사내유보금’을 분배도, 투자도 되지 않은 채 기업 금고 속에 쌓여 있는 현금이라는 오류에서 비롯. 따라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류를 재정리하여 일반인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반기업정서를 차단하고 기업정책에 대한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1. 반복되는 ‘사내유보금’ 에 대한 오해

□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sup>1)</sup>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하는 여당 대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삼성이 작년에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다” 며 반시장적인 분배론을 주장

• 민주당의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삼성 얘기를 거칠게 하기는 했지만, 발언의 핵심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1)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논의의 편의상 사용함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며 여권의 본심을 드러냄

○ 이후 여당 경제통 의원은 ‘사내유보금=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현금’이란 오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원에 달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이라고 주장

□ 이는 기본적으로 ‘사내유보금’ 을 분배도, 투자도 되지 않은 채 기업 금고 속에 쌓여 있는 현금이라는 오류에서 비롯

○ ‘사내유보금 883조원’이란 수치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가 올 4월 발표한 국내 30대 그룹의 2017년말 사내유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현금성 자산’ 과는 다른 개념

○ 이를 근거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성장의 혜택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소위 ‘낙수효과’ 가 없다는 게 여권의 기본 시각

□ 따라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류를 재정리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反기업정서<sup>2)</sup>를 차단하고 기업정책에

대한 좀 더 바람직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2. 사내유보금에 대한 진실

□ 진실 1: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 둔 현금’이 아  
님

○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주식발행 초과금)과 이익잉여금<sup>3)</sup>(당기순이익  
에서 배당을 차감한 금액)을 합쳐 ‘사내유보금’이라고 부름

- 실제로 사내유보금은 재무제표상 용어가 아니고 단지 외부가 아니  
라 내부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일 뿐 현금과는 다름

•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누적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누계잉여금’  
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

○ 즉, 사내유보금은 단순히 쓰고 남은 현금이 아니라 사업 확장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현금 및 금융자산, 공장, 기계, 재고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미 재투자된 자산개념임(자유광장, 2016.5.4.)

○ 따라서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현금성자산을  
제외하고 이미 투자된 공장, 기계 등 자산을 매각해 다시 투자하라  
는 터무니 없는 주장

2)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내유보금 이면에는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서 반재벌정서의 수단으로 사용

3) 이익잉여금만을 사내유보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사내유보금으로 통칭함

□ 진실 2: 한국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현찰을 ‘움켜쥐고’ 있지 않음.

- 우리 기업의 현금·현금성자산은 사내유보금중 약 11% 수준에 불과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2016년 제조업 현금·현금성자산은 사내유보금중 약 11%이며 대기업(7.7%)에 비해 중소기업(24.0%)이 3배 이상 높음
  - 현금·현금성자산에 단기투자자산까지 합친 비중도 27.7%에 불과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가 발표한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883조원중 현금성자산의 비중은 10~2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일례로 삼성의 2017년말 사내유보금은 269.5조원이지만 현금성자산은 32.3조원(재벌닷컴 발표)으로 그 비중은 약 12%에 불과

<표 1>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2015~2016년)

		현금·현금성 자산(A)	단기투자 자산(B)	사내유보* (C)	(A)/(C)x100	(A+B)/(C)x100
		조원	조원	조원	비중 %	비중 %
2015년	전체	95.3	149.3	874.7	10.9	28.0
	대기업	55.7	109.0	705.4	7.9	23.3
	중소기업	39.6	40.4	169.4	23.4	47.2
2016년	전체	102.6	158.4	941.0	10.9	27.7
	대기업	58.5	115.7	757.4	7.7	23.0
	중소기업	44.0	42.7	183.7	24.0	47.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사내유보=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국내 대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함

- 2012년 7개국의 시가총액 250대 상장사를 비교하면, 한국 대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은 9.2%에 불과
  - 미국(12.5%), 일본(16.3%), 독일 (13.9%) 등 선진국보다 낮고, 같은 중진국인 대만(20.6%)보다 낮고, 후진국인 중국(19.0%)보다도 낮음<sup>4)</sup>

○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금성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애플사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무작정 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단마저 빼앗는 셈

- 현금성자산은 직원들의 급여, 원자재구입, 인수합병자금, 비상금 등을 위해 보유해야하는 기본적인 보험금이라 할 수 있음

- 더구나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의 도전,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성 자산은 일종의 ‘비상식량’의 역할을 함

□ 진실 3 : 투자를 하지 않아서 사내유보금이 쌓인다는 말은 명백한 오류<sup>5)</sup>

○ 사례 1: 설비투자를 하든 현금을 보유하든 사내유보금은 동일

- A기업과 B기업의 자산, 자본금, 사내유보금은 각각 100억원, 10억원,

4) 신장섭, 「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2016년

5) 박세환, “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대체용어 모색”, 「월간상장」 2016년 9월호, 상장회사협의회

9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A기업은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B 기업은 전액을 설비에 투자

- 즉 설비투자는 사내유보가 아닌 현금자산의 감소로 나타남
  -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 기업의 현금·현금성자산은 사내유보금중 약 11% 수준으로 많은 편이 아님

<표 2> 사례1: 설비에 투자한 기업과 현금보유한 기업의 사내유보금 비교

A기업		B기업	
현금 100억원	자본금10억원	기계장치 100억원	자본금10억원
	사내유보금90억원		사내유보금90억원

○ 사례 2: 순이익을 배당대신 투자에 사용할 경우가 사내 유보율이 더 높음

※ 사내유보율은 사내유보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

- A기업이 현금배당 50억원을 지급할 경우 A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0억원으로 감소하며 이때 사내유보율은 400%로 감소
  - 낮은 배당이 사내유보금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우리기업의 배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하지만 A기업이 기계장치에 50억원을 투자할 경우, A기업의 사내유보금은 90억원으로 그대로이며 사내유보율은 900%가 됨

<표 3> 사례 1: 현금배당과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의 사내유보금 비교

A기업(현금배당)		A기업(설비투자)	
현금 50억원	자본금10억원	현금 50억원 기계장치 50억원	자본금10억원
	사내유보금 40억원		사내유보금 90억원

○ 살펴본 바, ‘실물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유보가 늘었다’거나 ‘사내유보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음

□ 진실 4 : 기업이 근로자 몫을 빼앗아 사내유보가 높아진 것은 아님

○ 이론적으로는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하면 사내유보가 높아짐

- 매출이 늘어나는데 급여(비용)를 늘리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이는 사내유보금 증가로 나타남

• 이것이 시민 단체와 노조가 사내유보금 환수를 주장하는 이유중 하나

○ 하지만 최근 통계를 살펴 보면 적어도 2011~2017년 중에는 기업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갔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 2011~2017년 중 총부가가치는 매년 4.6% 증가했지만 기업소득(영업잉여)은 3.1% 증가에 그친 반면 근로자 급여(피용자보수)은 5.3% 증가로 더 빠르게 증가<sup>6)</sup>

6) “소득주도성장론: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한 부실공사”, 「이슈브리프」 2018.8.9, 여의도 연구원

<표 4> 기업소득과 근로자 소득 증가율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1~2017
기업소득(영업잉여)		2.7	-0.8	2.6	1.7	4.1	4.9	6.7	3.1
부 문 별	비금융법인	2.1	-1.4	4.5	1.1	5.1	6.5		3.0
	금융법인	14.3	-4.4	-9.9	4.0	2.4	3.1		1.6
	가계	0.7	1.7	2.9	1.9	2.1	2.3		1.9
	일반정부	-63.0	-86.0	501.6	136.6	96.1	22.5		101.3
근로자소득(피용자보수)		6.3	5.1	5.0	5.1	5.6	5.2	4.4	5.3
총부가가치		5.7	3.4	4.1	4.0	5.1	4.7	5.2	4.6

자료: 한국은행,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3. 정책적 시사점

#### □ 사내유보금 대신 ‘세후재투자자본’ 등 대체용어 사용의 정착

○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는 회계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내유보금을 ‘사내’에 ‘유보’한 ‘현금’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서 비롯된 오류

-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사내유보금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실체와 다른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이로 인한 대기업 비난은 잘못된 대중선동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세후재투자자본’이나 ‘내부조달자본’처럼 본연의 용도에 가까운 용어의 사용을 정착시켜야 함<sup>7)</sup>

7)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의미 모색’ 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회계학 공동주최 (2016.7.27)

- 세후재투자자본: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것과 조달된 이미 여러 형태로 재투자되었음을 의미
- 내부조달자본: 조달원천이 외부인 부채와 주주자본납입금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누적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지분을 의미

#### □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투자자산이 되도록 과감한 규제혁파 필요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60여 곳이 보유한 올 2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 204조원은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증가<sup>8)</sup>

- 이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금 확보를 위한 현금화 자산 확보와 함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부진의 결과로 해석됨
- 실제로 최근 기업 설비투자는 최근 수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면서 올 성장률 전망치도 점점 하향조정되고 있는 실정

○ 기업의 현금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핵심

- 수도권 입지규제, 4차 산업과 관련한 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높이고 현금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로임

8) SBS\_CNBC, “앞날이 불안하니...현금 쌓는 기업들, 투자는 ‘찔끔’ 사내유보는 ‘최대’” 2018-10-02일



### Ⅲ. 그린벨트<sup>1)</sup>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작성: 김영현 연구원 ☎ 02-6288-0532

9.13부동산대책 발표에서 밝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서울시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의 수도권 택지공급 발표 전후로 그린벨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매년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정책 발표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주택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됨. 또한 그린벨트 3등급 이하 토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더불어, 중장기적 집값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1. 주요내용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의지를 분명히 함
  -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인한 주택공급량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환경단체들간의 첨예한 대립각 조성

1) 1998년 헌법재판소는 축산업자인 배모씨 등 3명이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 제한을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憲裁의 결정 이후 규제 완화 명분이 생기면서 김대중정부부터 그린벨트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따라 해제되기 시작함

-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견해차로 정책의 일원화 요원

정부·여당 입장	지방자치단체·환경단체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환경적 가치가 크지 않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개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벨트가 정부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토지 공급처로 전략</li> <li>- 그린벨트의 등급이 낮아도 보존 가치가 있음</li> <li>- 그린벨트 자체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억제 역할</li> <li>- 국토부가 그린벨트의 취지 무시</li> </ul>

○ 서울시, 해제 반대입장과 그린벨트 훼손을 방치하는 모순적 태도

- 서울시는 녹지 보존 및 경제효과 미미를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고수
-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총 1,374건, 97억 105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된 금액은 30억 8,906만원에 불과(징수율 31.8%)
- 서울시는 방치된 그린벨트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조치는 간과한 채 정부 입장을 반박하고 있음

##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현황

(단위:km<sup>2</sup>)

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서울	55.1	55.0	19.7	8.6	0.7
경기	377.7	472.5	220.2	81.6	15.0
인천	4.2	21.9	21.9	9.7	4.7
합계	437.0	549.4	261.8	99.9	20.5

출처: 국토교통부,지자체,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자료(재정리)

## 2. 그린벨트 거래량 및 해제지역 집값 상승

- 정부가 그린벨트 직권해제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훼손이 심한 3·4등급지를 중심으로 거래수요 증가
  - 정부의 수도권 택지공급 발표(9.21) 전후로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지분거래가 집중됨
    - 서울의 그린벨트 거래면적(9.5기준 한달간)은 9만3,400.47㎡로 전월 기준 4.88배 증가
      - ※ 강북구 우이동, 금천구 시흥동, 구로구 궁동(서울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급증
      - ※ 의왕·인천·시흥·광명 등 후보지 6곳의 거래량은 7월부터 최고 4배 이상 증가(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개발제한구역 거래량 증가와 관련하여 신규 택지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매년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19곳(경기도 13곳, 인천 5곳, 서울 1곳)
- 19개 지역 중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이 평균 5% 상승
- ※ 경기 하남미사지역 10.7% 상승해 가장 높았으며, 경기 과천시식정보타운 9.94%, 경기도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이 8.24% 상승(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3. 시사점

○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집값 안정화 직결 여부는 미지수

-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등 지자체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목표보다 공급량이 상당수 줄어 실효성이 낮음
- 정부는 성급한 정책 발표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주택 공급 예상 물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을 우선할 필요가 있음
-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값 안정화에 즉각적인 영향력이 미미함
-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보상을 거쳐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7년 정도 소요

○ 그린벨트 해제로 地價·집값 상승 초래

- 그린벨트 해제로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안정된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그린벨트 지역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됨
-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은 투자자들의 그린벨트 관심을 지속시킬 것이며, 그린벨트 地價 상승을 유발할 것임
- 불확실한 호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의 땅값 뺑뺑이도 일조하고 있음

○ 등급만으로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같은 등급의 토지라도 훼손 정도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음
  - ※ 3등급 이하의 토지는 10년 정도 관리할 경우, 1~2등급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음(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획일적으로 평가된 토지 등급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을 추진할 경우, 무분별한 환경 훼손과 그린벨트 地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정부, 환경단체,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해제 후보지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등급에 대한 종합적 평가

## 필요

※ 국토부는 2000년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면서 국토연구원가이 그린벨트의 환경평가를 시행했으며, 2016년 한 차례 갱신된 바 있음

- 현실적인 그린벨트 관리업무와 환경보전업무를 일원화하여 보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필요

## ○ 실질적인 집값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대책은 일시적 부동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투기지역 양산 등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음
- 단기적인 공급대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방안과 더불어 공급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

#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2018. 10

---

노명순 연구위원 (msnoh2012@naver.com)

1. 경과 / 1
2. 이번 사태의 본질 / 2
3. 갈등 요인 / 5
4. 갈등 유발의 3대 요소 / 7
5. 해결 과제 / 13

보고서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요 약 》

- 최근 심각한 수준의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가 공개되면서 정부·여당은 당정협의 등 각종 제재 및 재발방지 조치 강구중임
- 언론을 통해 논의되는 방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이 빠져 있는데, 사태의 본질을 찬찬히 살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해야 함
-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아공교육체제를 의무교육화 하는 대신, 손쉬운 방법인 개인 투자를 허용한 데 있음
- 유아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했던 박근혜정부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태를 예견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 문재인정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5년간 추진된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작년에 사실상 폐기하여 지금의 사태를 키웠음
- 본 보고서에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서 모호하게 운영되어 왔던 사립유치원의 근원적 갈등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강력한 이익집단화된 사립유치원, 방치와 결탁으로 사태를 키웠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문제를 분석하였음
- 근본적인 해결 과제는 유치원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 현 사태를 키운 1차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 사립유치원이 확실하게 공교육의 영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1. 경과

## ○ 최근 심각한 수준의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 공개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으로 공개
  - 유치원 2,058개 감사에서 91%의 유치원의 문제 적발
  - 적발된 1,878개 유치원 중에서 5,951건(269억원)의 비리 발생
  - 적발 유치원의 95%(1,085개)가 사립
-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명품 가방, 남편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 정부·여당은 당정협의 등 각종 제재 및 재발방지 조치 강구 中

- 교육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횡령죄 적용,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 국가회계시스템 적용 등을 담은 ‘유치원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한 해 2조원가량 주는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을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바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둘째, 사립학교법의 ‘교비 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조항(제29조 6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학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금까지도 교육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여당은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유치원의 재개원을 막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개정안 발의
- 이와 같은 논의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는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
- 사태의 본질을 살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함

## 2. 이번 사태의 본질

- 과거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음
  - 이 사업은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sup>1)</sup>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4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정보 5개년 계획(2014-2018)’에 5년 연차사업으로 확정·발표
  - 또한, 2017년 2월 정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을 위한 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 내용은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음

---

1) 유아교육법에 의거 정부는 5년마다 ‘유아교육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김상곤 前교육부장관,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사실상 폐기

- 이러한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8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성되어야 하나, 2017년 12월 사실상 이를 폐기<sup>2)</sup>
- 2017년 5월 교육부 차관 결재로 추진되었으나, 2018년 2월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전결로 이뤄진 ‘미집행 사업 감액 요청’에 의해 특별교부금 사업비 6억6천만원 전액 감액
-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면서도, ‘중단 사유’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서 한 장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부가 중단의 핵심 사유로 내건 민간개발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는 결국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사실상 이들의 비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짐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 필요
- 감사 대상에 비리 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당국자 포함
-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

○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아공교육체제를 의무교육화 하는 대신, 손쉬운 방법인 개인 투자를 허용한 데 있음

- 1)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의 영역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근본 문제
-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100여년 동안 유아교육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역

---

2) 교육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유아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에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없음. 이 계획을 확정짓는 2017년 12월에 제외됐다고 봐야함.

할을 수행했지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 모호하게 운영되면서 언제라도 회계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왔음

2)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학부모로부터 받던 비용을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나눠 받는 것일 뿐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간섭을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누리과정비는 법적(유아교육법 제24조)으로는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이나, 현장에서 사립유치원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면서 회계 부정의 가능성을 높였음

3)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높아졌으나,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해왔던 설립자 개인의 사적 권리 추구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미흡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정부의 방치가 초래한 결과

-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학원처럼 운영하던 사립유치원들이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유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었음

4)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사립유치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

- 이번에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의 상당수는 그간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관행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발생한 것임

- ☞ 이번 사태의 근본에는 유치원 교육의 전환기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있으며, 기존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현장을 방치한 시도교육청의 책임 또한 상당하다 할 것임

### 3. 갈등 요인

#### ○ 법적 지위는 학교, 실상은 학원

-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상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나,<sup>3)</sup> 설립자(대개 원장)의 개인 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라기보다는 학원에 가깝게 운영
- 학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이고, 학교는 영리 추구가 금지되는 비영리 기관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학교법인만 가능하나, 사립유치원은 법인 전환 과정 없이도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결과, 공익 목적 달성과 영리 추구 사이에서 혼란 발생

#### ○ 정부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

---

3)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
  -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부모가 유치원에 등록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사립유치원은 이 지원금이 2013년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냈던 원비이고, 지금도 수익자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라며 학부모에게 줄 것을 요구
  - 이와 달리 여론과 정부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sup>4)</sup>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을 들고 있으나,<sup>5)</sup> 이러한 정부의 책임 방기가 현재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4)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서 기록한 회계 내역은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구조 특성상 비리가 일어나기 어려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마다 회계시스템은 제각각이며, 일반인이 만든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곳도 있음. 정부는 이 기록을 감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음.

5)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갈등 유발의 3대 요소

### 1) 포퓰리즘 : 여야 막론한 모든 정치권

○ 다수 선진국은 초등 입학 직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무교육 도입을 오랫동안 논의해 왔지만 개인 설립자가 다수인 사립유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음

- 이에 정치권은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교육보다 무상교육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유입될 때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았음

○ 또한, 만5세 누리과정이 다수 유권자의 큰 호응을 얻자 이것 역시 제도적 준비 없이 3~4세까지 전면 확대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제도적 정비 없이 만3~5세의 모든 재원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누리과정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 2) 강력한 이익집단 :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전국 사립유치원의 3분의 2가 가입하고 있는 거대 이익단체

- 1995년 창립한 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운동(2002년)을 전개하는 등, 굵직한 유아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정치권 로비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왔음

○ 2002년 단설유치원 신설 반대 시작

- 단설유치원 신설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운동을 전개
  - 철저히 이해관계에 의한 반발이었으며, 이후 단설유치원 설립은 각 시도별로 추진과 중단이 반복하면서 혼선

○ 유아교육법 제정 뒤 10년간 한유총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

-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한유총은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을 개시
  - 영유아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이나를 두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 분야 단체와 정면 대치
  - 표를 내세워 정치권 압박하여 결국 유아교육법 제정 관철

○ 누리과정 도입 이후 투명성 강화 정책에 적극 반대

-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 국고지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

해야 한다며 거부

- 특히 유치원 회계 감사를 학교법인 수준으로 강화한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에 극렬히 반대하며, 규칙 개정 및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 자리마다 찾아와 집단 시위를 벌이면서 방해
- 이 때문에 당초 2016년 가을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무회계규칙은 1년이 미뤄져 지난해 9월에야 겨우 시행

○ 이처럼 한유총이 매년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의 공생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교육청 등과 관계를 형성하며 입법 로비를 벌여왔다는 비판 대두<sup>6)</sup>
- 현재 지역교육청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3) 방치와 결탁 :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 국가의 관리·감독 부재

- 사립유치원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잘못된 운영관행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
- 상습적 비리를 근절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
- 사립유치원 비리는 특별감사까지 갈 것도 없이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뤄지는 정기점검을 통해 계속 적발, 똑같은 비위 반복되는 상황

---

6) 신학용 전 의원에게 전달된 3360만원 뇌물성 후원금 유죄 확정

-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국고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체계를 세웠다면 이와 같은 사태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정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으로 7년간 사립 유치원에 10조2411억원을 지원했으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
- 국가재정이 투입되면 담당 부처는 목적에 맞게 똑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본 업무인데,
- 이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고 문제가 터지자 사립유치원을 범죄집단화하는 접근은 문제

#### ○ 너무나 정치적인 교육부 행태

- 그 동안 이익집단을 대변하거나 그들 앞에서 수세에 몰렸던 교육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음
- 집단휴원 시 학급 수 및 정원 감축, 재정지원 축소 등을 언급하며 경고
-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 사실 교육부는 2010-2013년 예산을 들여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 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당시 주된 과제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연계 여부 검토였음
- 그럼에도 교육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유장관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에듀파인 연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없다’ 고 거짓으로 답변

○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은 인력난 이유로 사립유치원 방  
치

-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이 2013년부터 누리과정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교육청마다 감사주기나 방식, 조치 수위가 천차만별이며, 그동안 공개하지도 않았음<sup>7)</sup>
- 유아교육법에는 시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각종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았던 것임
- 현재로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자료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시도교육청의 감사가 아니면 실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음

---

7) 서울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경기도는 제보받은 유치원 위주로 감사하고, 인천은 학급·원아가 많은 유치원을 감사하는 식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국회의원일 때 다르고 장관일 때 다른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이율배반

- 유장관은 ‘타협하면 미래가 없다’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시절에는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신학용 前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신 前의원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한유총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 이 법률개정안에는 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 경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사립유치원에만 특화된 재무회계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포함
-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매매를 보장하고 회계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내용임

## 5. 해결 과제 : 유치원교육의 공공성 확대

### ○ 국정조사 추진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을 문재인정부에서 폐기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
- 시도교육청 또한 정기감사에서 비리가 반복되었음에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개선을 유도하지도 않았던 바, 교육감들의 책임 방기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필요

### ○ 준비되지 않은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여당 발의 관련법 개정에는 가능한 협력

-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국가 수준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sup>8)</sup>
  -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감사체계를 통합하여 감사 관련 원칙 제정

### ○ 무엇보다 유치원 교육을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

- 누리과정 도입 후 지난 6년간 사립유치원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더 이상 사립유치원을 ‘사인이 운영하는 생계형 개인사업자’로 볼 수

---

8)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는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입력해 교육당국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이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고 있음

없다는 인식 확대

- 공적 교육의 책임과 권한을 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합리적 대안 필요
- 지금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나 회계 시스템 도입, 감사 확대만으로는 공공성 확보에 한계

○ 지난 정부의 유보통합 계승하면서 만5세 아동의 의무교육 추진

-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유보통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지금은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드러난 것일 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도 심각한 수준
-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고 무상교육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이미 의무교육에 준하는 것
-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
-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영형, 법인형 등으로 전환 유도하여 공교육 체제 확립 (예 1,2 참조)
- 국공립 유치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 품질이 보장되는 사립유치원에 선별적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 개인 소유자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공공성 강화

- 정부지원을 받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
- 법인화와 에듀파인 적용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끊고 정부 인증 유치원으로 관리
-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에 기여·참여할 선택권 보장
  - 2011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은 자체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파는 것은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 영세경영 유치원의 공립 흡수 및 시설유지개선을 위한 감가상각비와 설립재산 이용료 인정 방안 등 강구
- 자율재정운영 유치원 허용
  - 바우처를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자립형 사립고 형태), (가칭)자율형 사립 유치원 허용 병행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최소한의 관리감독(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립유치원 허용
  - 개인자본으로 설립된 교육기관 인정하여 학부모의 특별한 교육적 기대와 요구 반영

## 예1)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사립유치원 준공영제)

- 2013년 교육부의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공공형 유치원’<sup>9)</sup> 도입을 적극 추진
-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

## 예2) 사립유치원의 단계적 법인화 추진

-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 규제 및 법적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개인 운영의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 대책의 핵심
- 사립유치원이 법인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재정지원
  - 법인화하되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일본의 방식 참고
  -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은 先재정지원, 後법인유도 순으로 점진적으로 추진, 법인화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법인화해야 한다는 후속 조항을 만들어 추진

---

9) 공공형 유치원 :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공적 유아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유치원

<참고자료>

##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현황

### 1) 사립유치원의 비중

○ 2018년 4월 기준(교육통계)으로 전국의 유치원은 모두 9,021개

- 국공립 4,801개(53.2%), 사립 4,220개(46.8%)

- 학급 규모 : 국공립은 평균 1~3개반 유지, 사립은 1~14개반
- 학급당 원아수 : 국공립 평균 25명 내외, 사립은 43명 내외로 약 2배
- 사립유치원 : 법인유치원 15%(679개), 사인(개인) 85%(3,873개)
- 공립유치원 : 단설 8%(385개), 병설 92%(4,597개)

- 원아 수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 67만5998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50만3628명(74.5%)으로 국공립유치원생 17만2121명(25.5%)의 3배

-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통상 학교 유휴교실에서 1~5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 국공립유치원생은 서울 18%, 부산 15.8%, 광주 18.3%, 대구 17.5% 등 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은 평균을 밑돌고 있음

-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1.2%, 사립유치원의 87% 차지<sup>10)</sup>

---

10) 2017년 기준 사립유치원 4,282개 중 사인 3,724개, 법인 515개, 군부대 12개, 기타 31개

## 2) 사립유치원 제도의 급격한 변화

-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에 의해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음
  
- 첫 번째는 1981년 전두환 정부 시절 급격한 양적 확대
  - 1981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유치원 취학률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설정
  -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확대 : 시설 규정 완화, 무자격 원장이나 교사가 유치원 운영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 그 결과 유치원 수 급증 : 861개(1980) → 3,233개(1987)
  
- 두 번째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엄연한 현실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없이 누리과정 전면 도입, 연간 2조원 규모로 사립유치원 지원
    - 그전까지 사립 유치원은 정부 예산을 거의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원비를 받아 운영
    - 외국의 경우, 일정한 질적 요건을 충족한 영리기관에 한하여 비영리기관과 동일하게 경제적 지원 실시하는 것과 달리 채용하는 모든 대상(만 3~5세)에게 지원
  - 누리과정 도입을 계기로 사립 유치원도 '공교육 영역'으로 보기 시작

### 3)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국가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명시<sup>11)</sup>

- 2012년 이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누리과정비는 지금까지 총 11조 4000억원

○ 누리과정 지원금 항목

-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월 누리과정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뿐만 아니라 교사처우개선비 59만원, 학급운영비 1학급당 25만원, 교재교구비 학급당 10만원 등 다양함

- 사립유치원의 연간 세입 중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만 계산한 국고지원비율은 45.07%이며, 다른 비용을 포함하면 국고지원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짐

-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인건비, 교재교구비, 수업료 등에 사용하려고 기본적 지침을 주지만, 어떤 항목에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지는 않으며, 일종의 운영비로 유치원마다 알아서 사용하는 실정

---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 이런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지원금 내역**

구분	금액(매월)	지원 기준	지원 경로
누리과정비	22만원(1인당)	아이행복카드로 재원 확인 시	유치원 회계(운영) 통장
	방과 후 과정 선택 시 7만원 추가(1인당)		
학급운영비	25만원(1학급당)	학부모 부담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유치원에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유치원 회계(운영) 통장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59만원(1인당) (교원 기본급 보조) 비담임교사 46만원(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교원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	교사에게 직접 지급

※ 이 밖에 시도 교육청마다 별도 기준에 따라 기타 지원금 제공.

○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에 지원금 신청을 하고 정부 인증 은행에서 발급하는 ‘아이행복카드(바우처)’ 를 받으면, 이 카드를 갖고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직접 결제하는 식으로 사용
- 이 같은 바우처 방식은 2013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학부모 선택권과 무상보육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결정

○ 지원 경로

-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원아 수를 파악해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부가 그 원아 수에 맞춘 누리과정비를 시도교육청에 지급
- 이어 시도교육청이 개별 사립유치원의 운영 통장으로 누리과정비를 매월 1회씩 나눠 입금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8-20)

편집위원회 위원장 : 노명순 편집위원 : 김창배·이윤식 간사 : 이윤경

발행처 : 여의도연구원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http://www.ydi.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0월 25일 디자인 · 인쇄 : 원기획

---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